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6월 5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, 임명 및 위촉 기준,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사항이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 기준 등을 정함 (안 제4조제3항)
 - 건축 관련 단체(학회·협회)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
-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(신설, 안 제4조제4항)
 -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 해당분야 전문가를 1/4이상 참석하도록 함
- 심의 기준 (신설, 안 제10조)
 -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
 -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
 - 중앙건축위원회 심의한 사항(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생략)
 -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 거친 건축물(시·군 건축위원회 생략)
 -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 설명 참여기회 제공

의안 전문 : 따로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건축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건축 조례”라 한다.

제1조중 “건축법”을 “「건축법」”으로, “건축법시행령”을 “「건축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건축법 시행규칙”을 “「건축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. 다만,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

1.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
3.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

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,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회의내용”을 “회의개최 5일 전에 부의안건”으로, “위원에게”를 “각 위원에게”로 하며,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심의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.

②영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·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

③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, 제1항 중 “3인 이상 7인 이내”를 “5인 이상 10인 이내”로 한다.

제11조 및 12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.

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"건설산업기본법"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으로 한다.

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, 제3항제3호중 "건축사법"을 「건축사법」으로 한다.

제19조 내지 제33조를 제20조 내지 제34조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일반적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 (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건축법</u>(이하 "법"이라 한다), <u>건축법시행령</u>(이하 "영"이라 한다) 및 <u>건축법시행규칙</u>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건축법</u>」 ----- 「<u>건축법 시행령</u>」 ----- 「<u>건축법 시행규칙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구성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위원회의 위원은 <u>충청북도</u>(이하 "도"라 한다)의 <u>소속직원</u> 및 <u>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중 <u>충청북도지사</u>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99. 7. 30)</p>	<p>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</u> 중 <u>에서 충청북도지사</u>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 다만, <u>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</u>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</p>
<p><신 설></p>	<p><u>1.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2.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3.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</u></p>
<p><신 설></p>	<p>④<u>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,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

<p>제7조(임기)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임기)----- ---<u>3년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회의) ①(생략)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<u>회의내용</u>, 일시 및 장소를 기재 한 회의소집통보서를 <u>위원에게</u>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회의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<u>회의개최 5일전에</u> 부의 안건, ----- -----<u>각</u> <u>위원에게</u>-----.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<u>제10조(심의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.</u></p>
	<p><u>② 영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·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</u></p>
	<p><u>③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.</u></p>

<p>제10조(소위원회)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<u>3인 이상 7인 이내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는 <u>소위원회</u>를 설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소위원회)----- ----- ----- -----<u>5인 이상 10인 이내의</u>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생략) ~ 제12조(생략)</p>	<p>제12조(현행과 같음) ~ 제13조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수당과 여비) <u>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"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수당과 여비) <u>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5조(생략)</p>	<p>제16조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설치) 법 제76조의2 및 시행령 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<u>건설산업기본법</u>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)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7조(설치) ----- ----- -----<u>「건설산업기본법」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7조(생략)</p>	<p>제18조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구성) ① ~ ②(생략) ③(생략) 1.~ 2.(생략) 3. <u>건축사법</u>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4.(생략)</p>	<p>제19조(구성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1.~ 2.(현행과 같음) 3. <u>「건축사법」</u>----- ----- 4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생략) ~ 제33조(생략)</p>	<p>제20조(현행과 같음) ~ 제34조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[건축법시행령]

제5조(건축위원회)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. <개정 1994.12.23, 1995.12.30, 1999.4.30, 2005.7.18, 2005.10.20>

1.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
2.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
3.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

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, 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4.12.23, 2005.7.18>

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1999.4.30, 개정 2006.5.8>

1. 건축계획분야
2. 건축구조분야
3. 건축설비분야
4. 건축방재분야
5. 건축에너지분야
6.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
7. 조경분야
8. 기타분야

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시·군 및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. <개정 1995.12.30, 1997.9.9, 1998.5.23, 1999.4.30, 2000.6.27, 2005.7.18, 2005.10.20, 2006.5.8>

1.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(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)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(이하 "다중이용건축물"이라 한다)의 건축에 관한 사항

가.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·식물원을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<개정 2006.5.8>

나. 16층이상인 건축물

3의2.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<신설 2006.5.8>

4.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(이하 "건축조례"라 한다)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
5.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

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. <신설 1997.9.9, 1999.4.30, 2001.9.15, 2005.7.18>

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허가권자"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. <신설 2005.7.18>

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·임기 등에 관한 사항,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05.7.18>

1. 위원의 자격·임명·위촉 및 임기 기준<개정 2006.5.8>

가.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

나.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1 이하로 할 것

다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

라.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.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06.5.8>

마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<신설 2006.5.8>

2. 심의에 관한 기준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

나.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,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·군·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

다.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. 다만,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라.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

마. 위원별 의견,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

[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] - 2004. 6. 11 조례 제2805호

제3조(수당) ①각종 위원회(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(개정 2004. 6. 11)

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04. 6. 11)

[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] - 제정 2005. 2. 4 훈령 제1181호

제2조(출석수당) ①각종 위원회(사이버위원회 포함)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도 소속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
2.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
3. 위촉장 수여, 발표회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

②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 소속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

2.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직계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

3. 도 소속직원이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